

종합·해설



찢긴 이 농심 누가 알까

전국농민회 광주시농민회 소속 농민 10여명이 8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본랑동 풍숙미을에서 쌀값 하락에 항의하며 벼가 자라고 있는 논 2천300여 m²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는 가운데 한 농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땅바닥에 넘어지는 벼를 바라보고 있다. /위저링기자 jrwi@kwangju.co.kr

농어촌공사, J 프로젝트 알박기 강행

“지역 정치인들 도대체 뭐했나”

송천지구내 농어업회사 설립 사업자 확정 전남도 사업대상지 이전 등 계획 변경 검토

한국 농어촌공사가 이미 외자유치가 이뤄진 전남도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사업지구 가운데 한 곳인 해남 송천지구에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사업자를 확정하고 일시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1년이 넘도록 송천지구 사용문제를 놓고 농림식품부와 전남도가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결국 농림식품부가 사업자 선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송천지구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이곳에 외국자본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려던 전남도의 애초 계획의 축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지역에서는 송천지구 내 간척지 사용문제를 놓고 농림식품부와 전남도가 1년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리더들은 무엇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록 간척지의 소유자는 정부이지만 지역 리더들이 균형발전 논리로 농어업회사

설립을 막았어야 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한국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영강강지구(산이 2-1공구, 713ha)에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세울 사업자 3곳이 이 날 선정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3곳은 지난 4월 발표된 우선협상대상자 4개 법인 중 3곳으로 한빛 드림 주식회사(시설원예), (주)장수체(광공나루·새싹채소), 삼호용암영농조합(한우·콩·무화과) 등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지 713ha 중 기반 시설 사업지를 제외한 510ha를 기초조사와 측량, 토양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권한까지 부여해 사실상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사업을 본격화했다.

농어촌공사의 이번 사업자 선정은 이곳에 J프로젝트 송천지구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전남도의 송천지구 개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천지구는 전남도가 미국 트러스(STRUSS)그룹으로부터 45억 달러 투자계

약을 체결한 곳이며, 지난 9월 미국 트러스 그룹이 10만 달러의 자본금을 출자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중인 곳이다. 송천지구 개발사업을 전담하게 될 SPC에는 트러스 그룹 자본과 함께 중국 자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송천지구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사실상 송천지구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전남도는 농어업회사 계획 사업이 강행됨에 따라 송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자로 선정된 3곳은 지난 4월 발표된 우선협상대상자 4개 법인 중 3곳으로 한빛 드림 주식회사(시설원예), (주)장수체(광공나루·새싹채소), 삼호용암영농조합(한우·콩·무화과) 등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지 713ha 중 기반 시설 사업지를 제외한 510ha를 기초조사와 측량, 토양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권한까지 부여해 사실상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사업을 본격화했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F1지원법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일자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이날 공포되는 F1지원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년동안 효력을 갖는다. F1대회 개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법의 효력도 함께 연장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규정이 마

도는 우선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사업부지가 송천지구 사업예정지(1천566ha)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선정 사업자들도 굳이 부지를 송천지구로 고집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업대상자를 인근 삼호 2공구 또는 마산 2공구로 옮겨주는 방안을 농림식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는 농어업회사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인근의 다른 간척지를 농어촌공사에 요구하는 방안, J프로젝트 초 송천지구의 일부 부지를 송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 지원법 오늘 공포 2017년까지 효력

련됐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 구성, 대회시설 지원 등 예산, 조직, 규제완화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1년 남은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F1조직위원회 발족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F1조직위원회 발족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redplane@kwangju.co.kr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 국내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했고, 조직위에 기부하는 금품도 기부금의 5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람회 관련시설 기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받은 관광 사업시설, 해양레저용 기반시설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50% 감면되도록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됐다.

이밖에 조직위가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지(약 58만m²)에 대한 취·등록세와 조직위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도 면제된다.

강동석 조직위 위원장은 “과거 국내 행사와 비교해 대폭 강화된 세제지원은 조직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제지원안을 살펴보면 우선 박람회 관련 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박람회 조성 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아쿠아리움, 고급 숙박시설 등 민간사업 시행

민간투자 취·등록, 재산세 면제 관광시설은 재산세 50% 감면

정부, 여수세계박람회 획기적 세제 지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지원이 추진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에 역대 국제행사를 능가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세계지원이 추진된다고 8일 밝혔다. 세계지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전남도·여수시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로 취·등록세, 범인세, 개별소비세 면제 등 22개 항목에 걸쳐 마련됐다.

이는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세계 지원 16개 항목과 비교해볼 때 양적·질적으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같은 대폭적인 세계지원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투자 촉진과 박람회 관련시설 기반 인프라 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제지원안을 살펴보면 우선 박람회 관련 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박람회 조성 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아쿠아리움, 고급 숙박시설 등 민간사업 시행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병무청 “군필자 우대 필요”…여성계 반발 끝 듯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인근의 다른 간척지를 농어촌공사에 요구하는 방안, J프로젝트 초 송천지구의 일부 부지를 송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국방부와 여성부 등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산점제 부활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가산점제 추진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해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은 작년 6월 30일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 법안을 심의, 병역의무

이행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여성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은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원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가산점제는 남녀 또는 장애인 등을 차별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스마트 이태리가구

전주광역시 동구,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